

부산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53303(본소), 2022나53310(반소) 판결

[보관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장준동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열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6. 29.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19가단15775(본소), 2020가단 4962(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3. 6.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통틀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8,71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0,052,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6,081,654원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다툼 없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중기 매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3,448,960원과 피고가 대신 지급한 이 사건 크레인 기사의 급여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4,280,000원과 보험해지 환급금 429,710원²⁾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금 86,5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1심에서 계산상 착오로 위 보험금과 보험해지 환급금 합계를 4,764,71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4,709,710원으로 정정하면서도 반소 청구취지는 따로 확장하지 않았다).

2) 미지급 수익금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미지급 수익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한 사업의 수익금이 159,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 5, 7, 8, 9, 13, 16,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한 사업의 수익금이 86,5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은 피고가 구체적 근거 없이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이 사건 크레인의 수익금이라고 수기로

가필한 것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6, 10호증[피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갑 제11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후 피고로부터 자필 확인을 받은 문서여서 앞서 든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한 사업의 수익금은 다음과 같이 128,162,500원이고(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 공제는 하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으로 86,55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41,612,500원(= 128,162,500원 - 86,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간	수익금	기간	수익금
2017. 5.	6,700,000	2017. 9.	22,100,000
2017. 6.	23,862,500	2017. 10.	16,400,000
2017. 7.	19,800,000	2017. 11.	15,900,000
2017. 8.	23,400,000	합계	128,162,500

3) 주차장 임대료 대납금

을 제8,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부터 2017. 12.까지 이 사건 크레인의 주차를 위해 E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F 토지를 차임 월 1,000,000원에 임차하여 차임으로 합계 8,000,000원(= 1,000,000원 × 8월)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 대납금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7,868,190원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수익금 86,550,000원(= 공급가액 78,681,810원 + 부가가치세 7,868,19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7,868,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322,210원(= 미지급 수익금 41,612,500원 + 보험금 4,280,000원 + 보험해지 환급금 429,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44,817,15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23,448,960원 + 기사 급여 대납금 5,500,000원 + 주차장 임대료 대납금 8,000,000원 + 부가가치세 대납금 7,868,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수익금 등 채권으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2. 6. 30.자 준비서면이 2022. 7.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양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8. 3. 28.3) 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5,060원(= 위 46,322,210원 - 위 44,817,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김아름, 판사 이순혁

1) 항소장 기재 ‘26,261,654원’은 오산임이 명백하다.

2) 갑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보험해지 환급금은 2018. 3. 28.자 492,710원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와 같

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다.

3) 양 채권은 약정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종적으로 성립하는 보험해지 환급금 반환채권의 발생일인 2018. 3. 28.을 상계적상일로 본다.